

[서식 예] 기피신청서(법관이 피해자)

기 피 신 청

사 건 2000고단 000호

피고인 ○ ○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하여 판사 □□□를 기피합니다.

다 음

판사 □□□는 동사건의 피해자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1호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습니다.

2000년 0월 0일

위 피고인 〇 〇 〇 (인)

○○지방법원○○지원 귀중



제출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 출 기 간	판결선고시까지
신청권자	・검사 ・피고인 ・변호인(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)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(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자료제출)	관 련 법 규	형사소송법 18~23조
불복절차 및 기간	 합의부, 수탁판사, 단독판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3일내 즉시항고(형사소송법 23조1항, 405조) 수명법관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3일내준항고(형사소송법 416조1항1호, 동조3항) 		
사 유	1. 법관이 피해자인 때 2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, 호주, 가족 또는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.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, 후견감독인인 때 4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, 감정인,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, 변호인, 보조인으로 된 때 6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.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, 심리에 관여한 때 8.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		

※ (1)기피신청의 관할

- 1. 합의부의 법관 : 합의부
- 2. 수명법관, 수탁판사, 단독판사 : 당해법관
- 3. 법원의 서기관, 서기와 통역인 : 소속법원